

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706호
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. 4. 3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원장

1. 개정이유

- 「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추천 신설(안 제13조)
 - 의안의 성격상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
- 보존 회의록의 영구 보존(안 제45조)
-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(안 제62조, 안 47조의2)
 - 회의록 작성과 배부, 열람 등 위원장 권한 사항을 삭제하고 의장 권한사항을 안 47조의2를 신설

3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

제45조제2항 중 “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” 를 “보존회의록의” 로 한다.

제47조제1항 후단 중 “개재” 를 “계재” 로 한다.

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·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.

제6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16. (생략)</p>	<p>제13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<u>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</u></p> <p>17. (현행 제16호와 같음)</p>
<p>제45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</u>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.</p> <p>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<u>개재</u>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45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보존회의록의</u> ----- -----.</p> <p>제47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개재</u>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47조의2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·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.

제62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·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.

<삭 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본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함.

4. 작 성 자 :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